

# 11. 首都圈整備計劃法改正法律(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91號 1993. 6. 3

## 1. 개정이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 과제에서 제시된 수도권정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조정과 규제방식 전환등으로 정비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규제내용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서울주변도시의 인구증가와 수도권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비시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5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조정하며,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과 권역별 시행계획제도를 통합하여 수도권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업무·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수도권내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시설이 자발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방개발재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 신·증축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간접규제방식을 도입함.

다. 공장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내 증가가 과다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역과밀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클 때에는 시설설치의 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구와 제조업체의 집중정도가 높아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마. 수도권에서 공공청사를 신·증설하거나 대학을 증설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청

사 허용시에도 적정수준의 과밀부담  
금을 부과토록 하고 대학증설을 적정  
범위이내에서 증설토록 함.

바. 수도권지역의 주택보급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 북부·동  
부의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택지조성  
사업등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 중요사업은 국방과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함.

사.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교  
통·용수·환경시설 등 광역적 기반

시설을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  
여 설치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  
조 : 수도권계획과장, 전화번호 : 503-  
73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